

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서

(2 차 협력기업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1 차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된 상생벤더구매론 약정에 기초하여 _____(이하 “본인” 또는 “2 차 협력기업”이라 합니다)은 1 차 협력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 등(이하 “물품 등”이라 함)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.

제 1 조(목적)

이 약정은 은행과 1 차 협력기업 사이의 「상생벤더구매론」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납품대금을 수금하거나 하위 벤더기업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“구매기업”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1 차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2. “1 차 협력기업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약정(1 차 협력기업용)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
3. “2 차 협력기업”이라 함은 1 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(2 차 협력기업용)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4. “벤더기업”이라 함은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(벤더기업용)을 체결한 기업으로서, 2 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 또는 순차적으로 직전 N 차 협력기업에게 납품하는 N+1 차 협력기업을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의미합니다. 벤더기업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N 차 벤더기업을 “상위 벤더기업”, N+1 차 벤더기업을 “하위 벤더기업”이라 합니다.
5. “지급승인명세”(이하 “승인명세”라 함)라 함은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1 차 협력기업이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, 2 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.
6. “지급승인금액”(이하 “승인금액”이라 함)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1 차 협력기업이 2 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.
7. “결제일”이라 함은 1 차 협력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,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.
8. “선입금”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2 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, 제 9 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“선입금 등”이라 합니다.
9. “벤더입금”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2 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선입금한 대금을 벤더기업 또는 하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10. “벤더승인명세”라 함은 하위 벤더기업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2 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은행에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, 하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벤더승인이 필요합니다.
11. “기업인터넷뱅킹”이라 함은 기업뱅킹, Hana CBS, BiCNET 등을 말합니다.

제 3 조(입금계좌의 지정)

- ①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을 위한 본인의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.
(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의 입금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

- ②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출금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.

제 4 조(지급승인)

- ① 1 차 협력기업의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는 때에는, 은행은 1 차 협력기업이 2 차 협력기업에게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상생벤처구매론 약정에 따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하며, 은행은 승인명세의 내용대로 2 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② 제 1 항에 따라 은행이 채무인수하는 경우에는, 이 약정을 체결한 때에 2 차 협력기업이 지급승인에 따른 채무인수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.
- ③ 2 차 협력기업의 포괄적 승낙은 이 약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급승인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며, 2 차 협력기업은 개별 지급승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모든 지급승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, 해당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,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 5 조(벤더승인)

- ① 2 차 협력기업은 벤더기업에 대하여 물품 등의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, 은행에 벤더승인명세를 송부하여 자신에 대한 은행의 지급승인을 포기하고 벤더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지급승인(벤더승인)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이 벤더승인을 하는 경우, 은행의 2 차 협력기업에 대한 지급승인은 소멸하고, 은행은 벤더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2 차 협력기업이 벤더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이 약정에 따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정하며, 은행은 벤더승인의 내용대로 벤더기업에 대하여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합니다.
- ③ 제 2 항에 따라 은행이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, 제 4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합니다. 이 경우 2 차 협력기업은 벤더기업으로, 지급승인은 벤더승인으로 봅니다.
- ④ 벤더승인은 지급승인금액 전액에 대하여만 요청할 수 있으며, 지급승인금액을 분할하여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⑤ 은행의 벤더승인으로 말미암아 2 차 협력기업이 벤더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1 차 협력기업의 은행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.
- ⑥ 벤더기업은 하위 벤더기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회차에 제한 없이 벤더승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은행이 벤더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이 조를 적용합니다.

제 6 조(벤더승인명세의 전송)

벤더승인명세의 전송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.

1. 벤더승인명세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 용도로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.
2. 벤더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3. 벤더승인명세의 금액 및 결제일은 승인명세와 동일하여야 합니다.
4. 벤더승인명세의 전송은 기업인터넷뱅킹, 펌핑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“벤더승인신청서” 및 해당 벤더승인명세를 파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5. 은행은 벤더승인이 있는 해당 명세를 하위 벤더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.

제 7 조(승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)

- ① 1 차 협력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에는 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, 지급승인 이후에는 2 차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, 전산조작 오류,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, 은행에 지급승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승인명세의 판매기업(2 차 협력기업) 및 승인금액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 후 새로 전송하여야 합니다.
- ② 2 차 협력기업은 은행의 벤더승인이 있기 전에는 벤더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, 벤더승인 이후에는 벤더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, 전산조작 오류,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, 은행에 벤더승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판매기업(벤더기업) 및 승인금액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 후 새로 전송하여야 합니다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 1. 승인금액 또는 벤더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하거나 벤더승인이 완료된 경우
 2.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

- ④ 승인명세 등(승인명세, 벤더승인명세, 지급승인, 벤더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)이 취소된 경우, 은행은 취소된 승인명세 등에 대하여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, 승인명세 등의 취소에 대하여 2 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, 승인명세 등의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⑤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등에 대하여는, 은행이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제 8 조(지급승인 등의 제한)

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을 제한합니다.

- 1.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용도 외의 승인명세 또는 벤더승인명세가 전송된 경우
- 2.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을 판매기업으로 하여 승인명세 또는 벤더승인명세를 전송하는 경우
- 3. 승인명세 또는 벤더승인명세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(가)압류 등의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
- 4. 1차 협력기업과 은행간 체결한 상생벤더구매론 약정서에서 정한 지급승인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5. 2차 협력기업이 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
- 6. 1차 협력기업 또는 2차 협력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은행의 여신관리 목적상 필요한 경우

제 9 조(선입금 등)

- ① 2 차 협력기업은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을 받은 경우 결제일 전에 제 10 조에 따른 이자를 차감하고 선입금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하거나, 선입금 없이 결제일에 만기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2 차 협력기업은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을 받은 경우 결제일 전에 제 10 조에 따라 자신의 하위 벤더기업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(벤더입금)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③ 선입금 등은 지급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결제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할 수 있되, 선입금가능일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선입금 등이 가능합니다.
- ④ 선입금 등은 지급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횡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⑤ 선입금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요청에 용하기로 하되, 제 8 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입금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⑥ 선입금 등은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함이 원칙이나, 인터넷뱅킹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때 제출하는 “납품대금선입금(벤더입금)신청서” 상의 인감이 2 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 인감일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.

제 10 조(대출이자 및 수수료)

- ① 선입금시 발생하는 대출이자 2 차 협력기업이 부담하기로 하며, 벤더입금시 발생하는 대출이자 2 차 협력기업이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대출이자율은 은행과 구매기업(또는 1 차 협력기업)이 약정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, 2 차 협력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② 벤더입금시에는 건별 벤더취급수수료를 부과하며, 벤더입금 신청시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③ 벤더승인시 건별 벤더승인취급수수료는 2 차 협력기업이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④ 수수료 징구방법, 시기, 금액 등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기로 하며,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 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

제 11 조(납품대금의 입금)

은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납품대금 입금업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.

- 1. 선입금을 신청하는 경우
선입금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2 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
- 2. 벤더입금을 신청하는 경우
가. 2 차 협력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: 벤더입금시 2 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서 선입금이자 및 벤더취급수수료를 출금하기로 합니다.
나. 벤더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: 선입금이자 및 벤더취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벤더기업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
- 3. 벤더승인신청시 : 벤더승인시 2 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서 벤더승인취급수수료를 출금하기로 합니다.

4. 만기입금시 : 결제일에 2 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 승인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.

제 12 조(압류 및 지급보류 등)

- ① 1 차 협력기업에 대한 2 차 협력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(가)압류, 가처분, 체납처분(이하 “압류”라 함) 등이 송달된 경우 또는 은행에 대한 2 차 협력기업의 대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해당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되거나 지급승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류등록을 하여 2 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 입금을 보류합니다.
- ② 벤더기업을 채무자로 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.
 - 1. 2 차 협력기업을 제 3 채무자로 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2 차 협력기업에게 압류가 송달된 경우
 - 가. 은행의 벤더승인이 있기 전인 경우, 2 차 협력기업은 관련 벤더승인명세를 전송하지 않기로 합니다.
 - 나. 은행의 벤더승인이 있는 후인 경우에는 벤더승인으로 인하여 은행이 해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 - 2. 은행에 대한 벤더기업의 대금 지급 채권에 대하여 은행을 제 3 채무자로 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
 - 가. 은행의 벤더승인이 있기 전인 경우에는 은행이 채무 인수하기 전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 - 나. 은행의 벤더승인이 있는 후인 경우, 은행은 즉시 지급보류등록을 합니다.
 - 3. 압류가 장래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2 차 협력기업은 관련 벤더승인명세를 전송하지 않기로 합니다.
 - 4. 지급보류 등록한 벤더승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합니다.
 - 가. 결제일 도래시 벤더기업 입금계좌로의 입금을 보류하고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.
 - 나.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③ 2 차 협력기업이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에 위반하여 벤더승인명세를 전송하고 이에 따라 이 약정에 의한 거래가 실행된 경우 2 차 협력기업이 변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
제 13 조(이용시간)

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 거래는 은행 영업시간중 가능하며,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서비스 종류	평일	토요일/일요일/공휴일
조회	24 시간	가능
판매기업 등록	08:00~22:00	불가
선입금 신청	08:00~19:00	불가
구매자료 승인/변경/취소 (당일전송 당일만기) (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)	08:00~22:00 08:00~15:00(EDI 14:00 까지) 08:00~20:00(EDI 16:00 까지)	불가
벤더입금	08:00~19:00	불가

-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고객이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. 단, 등록된 연락처의변경 후,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,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③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제 14 조(자료의 제출)

2 차 협력기업은 이 약정과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성실하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 15 조(면책)

-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2 차 협력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
- ② 이 약정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 “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”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③ 승인명세 등이 해킹,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인 없이 발생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2 차 협력기업이 입금을 받은 때에는 입금 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

제 16 조(효력)

- ① 이 약정서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순서로 합니다.
- ② 은행과 2 차 협력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
제 17 조(정보제공의 동의)

2 차 협력기업은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2 차 협력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및 선입금, 벤더승인 등의 거래내역을 1 차 협력기업 및 벤더기업에게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

20 년 월 일

[2 차 협력기업]

기업명(본인) : _____ (인)

주 소 :

상생벤처구매론 2차협력기업 거래신청서

본인확인 및 인감대조	담 당	책임자	관리자	부점장

1. 2차 협력기업(판매기업) 정보

법인명 (또는 상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대표이사 (또는 대표자명)		법인등록번호	
업 태		대표이사(대표자) 생년월일	
주요취급품목			
사업장 주소	(우편번호:)		
전화번호		팩스번호	
기업규모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 및 기타		

※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“□”에 “✓” 표시 합니다.

2. 담당자 정보

담당부서		담당자명	
담당자전화번호		담당자휴대전화번호	
담당자팩스번호		담당자이메일	

3. 첨부서류

- (1) 법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
- (2)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개인인감증명서(본인 자서 날인시 생략가능), 대표자 실명확인증표
- (3) 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
 - ① 법인사업자 :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, 법인인감증명서, 수임인 실명확인증표
 - ② 개인사업자 : 위임장(개인인감 날인), 개인인감증명서, 수임인 실명확인증표
- (4) 공동대표인 경우
 - ① 법인사업자 :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.
 - ②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상생벤처구매론 2차 협력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사업자 1인과 약정 체결합니다.
- (5) 위의 기본서류 외에 상생벤처구매론 2차 협력기업 이용약정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이 약정과 관련하여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상생벤처구매론 이용약관(2차 협력기업용)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_____ (인)